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63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이해민·신장식·김재원

정춘생 · 김준형 · 백선희

황운하 · 서왕진 · 조인철

박은정 • 차규근 • 김선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하 '과기부 장관')은 민·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,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
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.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있음.

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,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, 사

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(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 항제11호의3·제12호 삭제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8조의7(이행강제금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징수·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 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76조제3항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8조의7(이행강제금) ① 과학
	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
	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
	<u>망을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4</u>
	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
	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
	경우 또는 제48조의4제6항에
	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
	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
	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
	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
	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
	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	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
	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
	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
	수 있다. 다만, 매출이 없거나
	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
	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
	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
	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	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・납부・
	<u>징수·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</u>

제7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2. 삭 제

2의2. ~ 11. (생략)

11의2. 삭 제

- 11의3.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2.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

 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

 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

은	대통령령으로	정한다
_	7, 0 0 0	0 -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·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 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

2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12의2. ~ 25. (생 략)	12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